

〈경기문화재단 채용 공고 제2025 - 026호〉

경기문화재단 비상임임원(이사) 공개모집 공고

경기문화재단의 비상임임원(이사)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모 직위(직급)·인원·임기·주요업무

공 직 모 위	인 원	임 기	주 요 업 무
경기문화재단 이사 (비상임 임원)	2명	2년 (연임 가능)	○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 1.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6. 비상임 이사의 선출 및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 모집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행정안전부)
- 경기문화재단 정관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12조(임기),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 경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3. 응시자격 및 요건

○ 필수요건

- 「경기문화재단 정관」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의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의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5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피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장계로 피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장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자격요건(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1)

구분		자 격 요 건
포괄적자격 요건	비상임 임원	• 재단의 사업분야 및 경기도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경영 전반에 대한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 합리적 판단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자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필수요건		• 재단 정관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보수수준

- 이사회 참석시 참석수당 지급

5. 임용절차

- '임원추천위원회' 심의·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최종 임명

6. 시험방법 및 일정

- 1차시험(서류전형) : 2025. 6. 26(목)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평가항목

- ①임원으로서의 리더십과 능력(25점), ②재단의 합리적 경영 의지(25점)
- ③공공성과 경영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잠재적 소양(25점), ④전문적 지식과 경험(25점)

※ 심사기준 : 100점 만점기준 / 최고·최저점 제외 및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 결정

- 최종 후보자 발표 : 2025. 6. 30(월) 이후 개별통보

- ※ 단,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기간 관련 절차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비상임임원 최종합격자는 경기도지사의 대상자 선정 및 결격사유 조회 이후 확정

7. 응시원서 접수

- 모집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6. 5.(목) ~ 2025. 6. 20.(금) 17:00까지 <16일간>
- 접 수 처 : 경기문화재단 인사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 ① 등기우편 접수
 - (우)1661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2층 인사팀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② 방문 접수

- (우)1661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2층 인사팀
- 평일 10시~17시 접수(12~13시(중식시간)/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③ 이메일 접수 : hr@ggcf.or.kr

-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첨부양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사유확인서

○ 기타 제출 서류(선택)

-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9. 유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결격처리 될 수 있음
- 자격증 등 증빙 자료 사본 제출 시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에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만 인정 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본 공모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게시판 공고 혹은 대상자별 개별 통보하여 안내함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만 가능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등기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금액은 서류 반환 청구자가 부담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 즉시 파기

○ 불합격자의 이의제기신청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 (hr@ggcf.or.kr)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 접수된 이의제기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연장 될 수 있음
- 우편수신을 신청하는 답변의 경우, 우편요금은 이의제기신청인 본인 부담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인사팀(전화:031-231-7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5.

경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